#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

## 제 안 설 명

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박환희 의원입니다.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조례안이 의결·공포되는 경우, 시장 및 교육감이 해당 조례의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,
조례와 예산을 연계하는 동시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인 하였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□ 시장 및 교육감이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
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함께 보고하도록
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 취지를
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
습니다.
□ 감사합니다.